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16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손명수·한민수·조인철

김한규 · 남인순 · 정태호

김원이 • 이연희 • 문정복

박용갑・박 정・이건태

김현정 • 이기헌 • 정준호

김선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확정된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 판결보다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고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1. 무죄 사건의 피고인이 제2조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면소·공소기각 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항제1호의 보상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 3. 치료감호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항제2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 항제3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하여 불 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29조의2(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고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수 있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1. 무죄 사건의 피고인이 제2조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면소・공소기각 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항제1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제26조제1항제2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건의 피고인이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
	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 대

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게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 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 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